

## 신탁계약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 : 2018년 11월 15일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법령 반영 (운용 및 투자 제한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대비표:**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25조 (수익증권의 환매연기)	기재 수정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 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>다. (...)</p> <p>라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p> <p>마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p>	<p>① 1.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</p> <p>가. (...)</p> <p>나.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·휴장 또는 거래정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(아래 예시 참조)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결정의 일시적인 중지와 주식의 발행, 전환, 환매의 일시적인 중지가 되는 경우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ii)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받은 경우</p> <p>다. (...)</p> <p><b>(삭제)</b></p>
제3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법령 반영	<p>① 6. 라. 위 본문 (i)과 관련하여,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</p>	<p>① 6. 라. 위 본문 (i)과 관련하여,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<b>(법</b></p>

피델리티 글로벌 금융주 증권 모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	<b>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</b> 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
제3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기재 수정	① 6. 마. 위 본문 (ii)와 관련하여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	<b>(삭제)</b>
부칙	신탁계약 체결 변경	-	<b>(추가)</b> <b>부칙 (2018.11.00)</b>  *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